

교육수요자 만족도조사 운영규정

(제정 2017. 9. 1.)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전주대학교(이하 “본교” 라 한다) 「학칙」 제82조에 따라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실시하는 교육수요자 만족도(이하 “교육만족도” 라 한다) 조사의 범위, 대상, 방법, 절차 및 그 결과의 활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규정은 본교의 학사행정 및 교육서비스에 대한 교육만족도 조사, 분석, 평가 및 개선 활동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.

제3조(조사대상) 교육만족도 조사대상은 본교의 재학생, 졸업생, 학부모, 산업체 등으로 한다.

제4조(조사범위) 교육만족도 조사는 교수강의, 교육과정, 학생지도, 교육환경, 학생자신 등 교육관련 전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. 다만,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정범위에 한정하여 조사할 수 있다.

제5조(조사시기) 교육만족도는 매년 1회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제2장 책임과 권한

제6조(주관부서) 교육만족도 조사 주관부서는 교육혁신본부 교육과정평가센터로 한다.

제7조(실행부서) 교육만족도 조사 실행부서는 조사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으며, 교육만족도 세부 조사계획 수립, 조사 실시 및 결과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. 다만, 교육만족도 조사의 객관성·공정성·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외부 조사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1. 재학생, 졸업생 만족도 조사: 교육과정평가센터 <개정 2018.5.31.>
2. 학부모 만족도 조사: 학사지원실
3. 산업체 만족도 조사: 기업지원센터

제3장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

제8조(설치)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하기 위해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제9조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, 총장이 위촉한다.

② 위원장은 교육과정평가센터장이 된다.

③ 기초융합교육원장, 교무부처장, 기획부처장, 학생취업부처장, 입학부처장, 기업지원센터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며, 그 밖의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.

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보직 재임기간으로 하며, 그 밖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⑤ 위원회에 간사와 서기를 두며, 간사는 교육혁신지원실장이 되고, 서기는 업무담당자가 된다.<개정 2019.9.1.>

제10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구 및 심의한다.

1. 교육만족도 조사 종합계획 수립 및 관리
2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평가
3.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 환류체계 구축
4. 그 밖에 교육만족도 조사에 관한 사항

제11조(소위원회) 교육만족도 조사대상에 따른 교육만족도의 세부 조사를 위해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12조(회의) 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.

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4장 업무절차

제13조(교육만족도 종합계획 수립) ① 교육혁신본부장은 매 학년도 교육만족도조사위원회의 심의와 교육혁신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교육만족도조사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종합계획은 조사의 목적, 대상, 일정, 방법, 조사항목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.

제14조(조사실시) ① 주관부서는 종합계획에 따라 조사대상별 실행부서로 하여금 교육만족도 세부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.

② 실행부서는 설문조사, 면담, 유무선통화 등 적절한 방법으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.

제15조(결과제출) ① 실행부서는 조사자료를 분석·평가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주관부서는 결과보고서가 부적합하거나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.

제16조(결과보고) 주관부서는 각 부서의 조사결과를 취합·정리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제5장 환류체계

제17조(환류체계) 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대한 분석 및 평가, 조사 결과에 대한 환류 체계를 구축하고, 그 결과를 대학경영계획 및 중장기발전계획, 교육 및 행정서비스의 질 개선, 교육과정 개선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 <개정 2019.12.20.>

제18조(업무개선) ① 교육혁신본부장은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대해 관련부서에 개선 및 예방조치 또는 개선활동을 요구하여야 한다.

② 요구를 받은 관련 부서장은 이에 관한 개선 계획 및 실적을 교육혁신본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7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8년 5월 3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9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.